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63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문진석·김 윤·이정문
김주영·이해식·허 영
박 정·김기표·이연희
안태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전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형평성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공사의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간의 형평성 제고와 규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등).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이나 변경협의를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 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단서 신설></u> <u><신 설></u> <u><신 설></u>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 ----- ----- ----- ----- ----- ----- ----- ----- -----.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 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를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u> <u>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 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u>

② · ③ (생 략)	<u>위한 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에 대한 공사</u> ② · ③ (현행과 같음)
-------------	--